"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해양수산부

해 양 수 산 부

바다의 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의 분류 기준 변경 안내

1.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27호, '16.12.30)과 관련입니다.

2. 화물료 변경에 따른 선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화물의 분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시행 일자를 '17.3.1.00시 이후 입항하는 화물에 대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L-NET에서는 2017.3.1.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PORT-MIS 반영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정의)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단,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 기존 내항화물로 신고된 화물의 대납수수료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선원정책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정책과장, 항만투자협력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강원도환동해본부장, 전라남도지사(해양항만과장), 충청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해운조합이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한중카페리협회장, KL-NET 사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수신자 확인

주무관 김병남 과장 전결 2017. 2. 20. 홍래형

협조자

시행 항만운영과-951 (2017. 2. 2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74 팩스번호 044-200-5789 / goldman1@korea.kr / 대국민 공개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